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91
----------	-------

발의연월일 : 2026. 7. 10.

발 의 자 : 전진숙 · 이수진 · 남인순
정준호 · 안호영 · 손 솔
김종민 · 김남희 · 이인영
허종식 · 이정문 · 김정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그런데 혼인 중의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반면,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모의 혼인 여부를 이유로 유아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

라 하더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외국 국적 혼인 외의 출생자의 무상교육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법」 제855조 또는 제85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조정·화해를 포함한다)을 받은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조의2(외국 국적 혼인 외의</u> <u>출생자의 무상교육에 관한 특</u> <u>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u> <u>「민법」 제855조 또는 제855</u> <u>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u> <u>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되</u> <u>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u> <u>모를 상대로 같은 법 제863조</u> <u>에 따른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u> <u>확정판결(조정·화해를 포함한</u> <u>다)을 받은 외국 국적의 유아</u> <u>에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2</u> <u>4조에 따른 무상교육을 실시한</u> <u>다.</u>